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 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 
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 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 
예고합니다.

2021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이 장



## 「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코로나19 피해로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市 · 자치  
구 협력 민생대책 《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》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 
상위법 제정 및 「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기금 관련 공무원의 소속  
행정기구명 변경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,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 
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목적

- 상위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근거 법률명 변경

#### 나. 기금의 용도

-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, 이자차액보전(이자지원)의 근거 규정 마련
- 다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회계공무원
- 위원장, 기금운용관명 변경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전통시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 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서 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  - 1) 전자우편 : hrlee0526@junggu.seoul.kr
  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
  - 3) 전 화 : 02-3396-5043 (팩스 : 02-3396-8680)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의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융자
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
2.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
**제6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**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③ 위원장은 경제친화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1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**제14조(회계공무원)** ② 기금운용관은 전통시장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</li> <li>2.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-- -----.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용도에 사용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융자</li> <li>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 략)  ② (생 략)  ③ 위원장은 <u>기획재정국장</u> 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선한다.  ④ (생 략)  ⑤ (생 략)	1. <u>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</u>  2. <u>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</u>  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<u>경제친화국장</u> ----- ----- -----.  ④ (현행과 같음)  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(생 략)  ② 기금운용관은 <u>일자리경제과장</u> 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주사로 한다.  ③ (생 략)  ④ (생 략)	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<u>전통시장과장</u> ----- ----- -----.  ③ (현행과 같음)  ④ (현행과 같음)